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0년 1월 20일
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2009년 5월 2일자로 최초 효력을 발생한 본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중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초 간이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1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명칭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7892

2. 모집예정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000,000,000,000 좌

- 주 1) 이 투자신탁은 10,000,000,000,000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 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펀드코드: 47891)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펀드코드: 47892)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47893)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펀드코드: 49655)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 나.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국내주식	70% 이상	법 제 4 조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국내법인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국내주식”)
	70% 이상	단, “국내주식” 중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국내채권 및 외국채권	3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및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자산유동화채권에 해당하는 증권 및 사모사채는 제외한다.)(“국내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채권”). 단, 외국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며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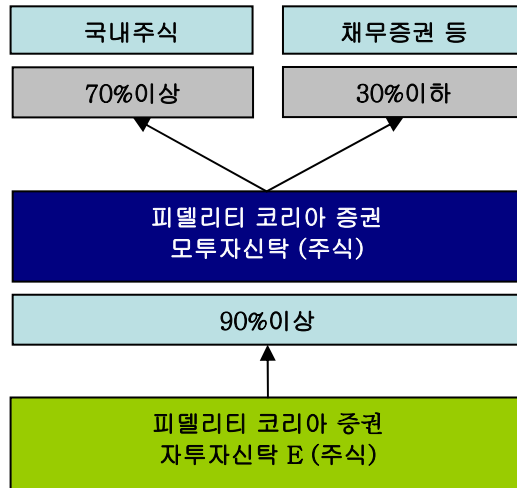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높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평균 또는 시장평균 보다 더 높은 수익성장률이나 회복추세를 보이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우수한 경영 능력, 세계적인 경쟁력, 건전한 재무구조, 높은 유동성과 낮은 타인자본조달비율을 보이는 회사들을 선호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본인에게 보다 확고한 확신을 주는 기업들에 보다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운용인력은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기업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업 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는 업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08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태우	1967	한국주식운용 부문대표	6개	15,349 억원	피델리티 코리아 주식형 펀드 운용 등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일임계약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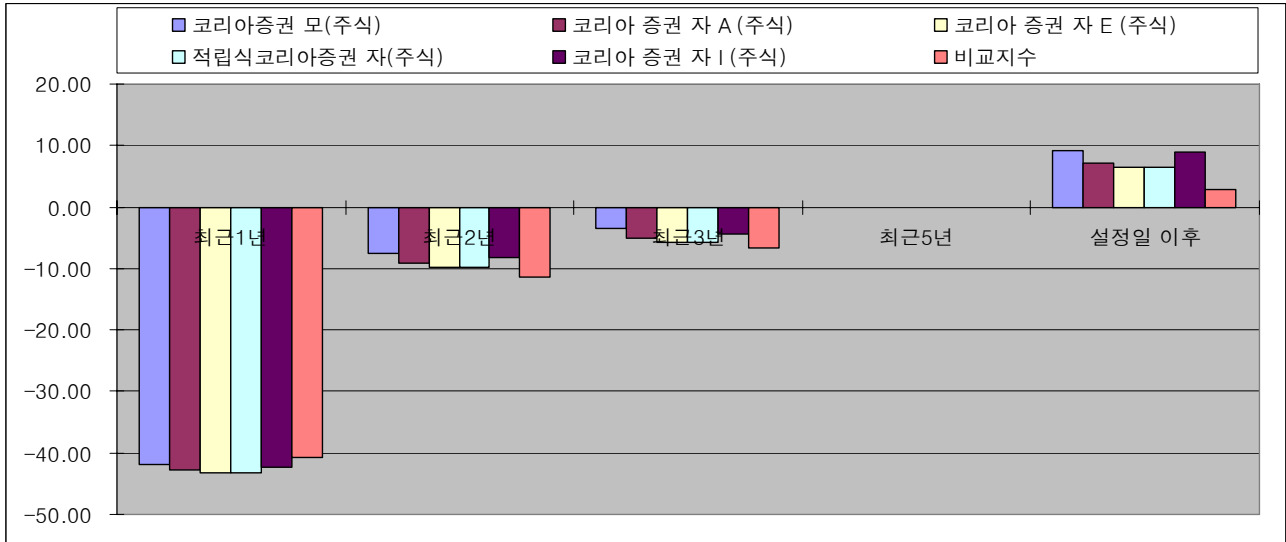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연도	최근1년 2008.01.01 ~ 2008.12.31	최근2년 2007.01.01 ~ 2008.12.31	최근3년 2006.01.01 ~ 2008.12.31	최근5년 (YY.MM.DD~YY.MM.DD)	설정일 이후 2005.03.03 ~ 2008.12.31
코리아증권 모(주식)	-41.98	-7.51	-3.45		9.18
코리아 증권 자 A (주식)	-42.76	-9.10	-5.14		7.14
코리아 증권 자 E (주식)	-43.25	-9.79	-5.85		6.38
적립식코리아증권 자(주식)	-43.24	-9.78	-5.82		6.41
코리아 증권 자 I (주식)	-42.31	-8.33	-4.34		9.02
비교지수	-40.73	-11.46	-6.58		2.91

*비교지수 : KOSPI



1) 비교지수 =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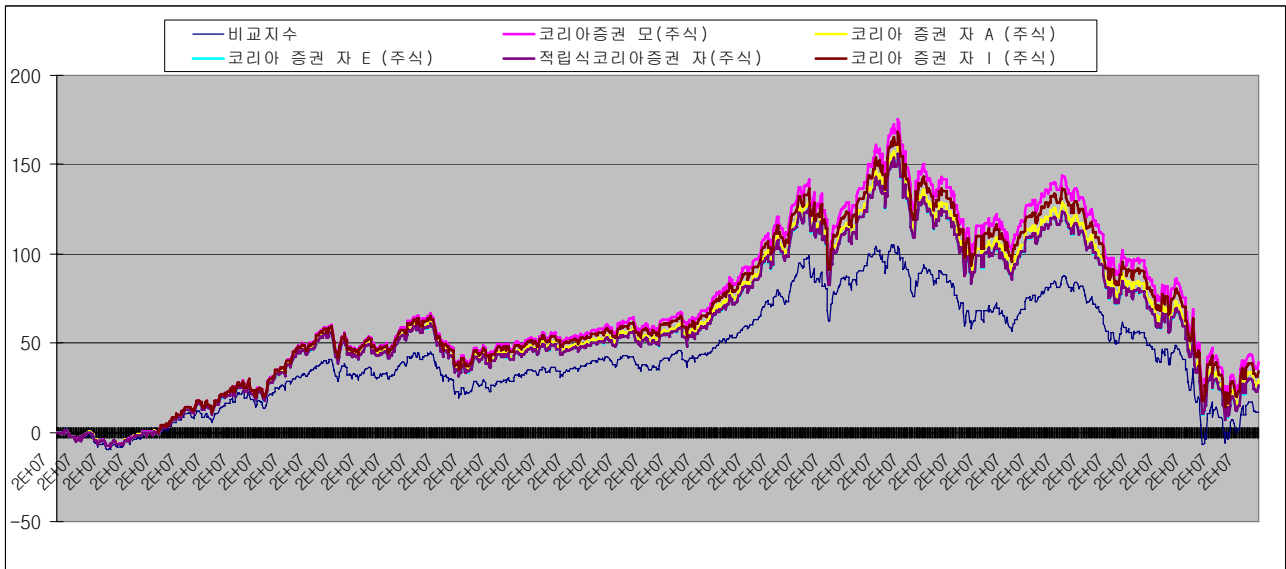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연도	최근1년차 2008.01.01 ~ 2008.12.31	최근2년차 2007.01.01 ~ 2007.12.31	최근3년차 2006.01.01 ~ 2006.12.31	최근4년차 2005.03.03 ~ 2005.12.31	최근5년차 (YY.MM.DD~YY.MM.DD)
코리아증권 모(주식)	-41.98	47.45	5.21	55.55	
코리아 증권 자 A (주식)	-42.76	44.36	3.32	52.60	
코리아 증권 자 E (주식)	-43.25	43.39	2.57	51.89	
적립식코리아증권 자(주식)	-43.24	43.43	2.61	51.91	
코리아 증권 자 I (주식)	-42.31	45.67	4.17	54.76	
비교지수	-40.73	32.25	3.99	36.91	

*비교지수 : KOSPI



1) 비교지수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펀드코드: 47891)	2005.3.3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 없음)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펀드코드: 47892)	2005.3.3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 없음)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47893)	2005.3.3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 없음), 적립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펀드코드: 49655)	2005.6.27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선취판매수수료	1.00%이내	-	-	-	수익증권 매입시	
환매 수수료 ¹⁾	-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합계	환매수수료 (적용되는 경우)와 선취판매수수료의 합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 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투자신탁별 총보수·비용 비교]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	0.800	0.800	0.8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1.000	1.800	1.800	0.1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40	0.040	0.040	0.04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8	0.028	0.028	0.028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기타 비용	0.013	0.029	0.033	0.013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1.881	2.697	2.701	0.981	
합성총보수비율	1.881	2.697	2.701	0.981	
증권거래비용	0.197	0.197	0.197	0.197	사유발생시 지급됨

주) 기타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고, 합성 총보수비율은 자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을 모두 포함함.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투자기간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6,451	871,512	1,527,567	3,477,173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6,451	871,512	1,527,567	3,477,173

주 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 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모 투자신탁 및 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임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3)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9년 3월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5) 장기적립식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081231	20071231	20061231
I. 운용자산	262,741,337,788	488,283,433,692	451,554,034,942
증권	260,135,356,490	483,361,667,286	447,075,607,182
현금 및 예치금	2,605,981,298	4,921,766,406	4,478,427,760
II. 기타자산	201,642,964	1,201,913,042	1,594,066,759
자산총계	262,942,980,752	489,485,346,734	453,148,101,701
II. 기타부채	740,753,443	2,222,495,365	2,522,324,767
부채총계	740,753,443	2,222,495,365	2,522,324,767
I. 원본	462,056,660,587	339,809,401,664	439,334,495,529
II. 수익조정금	9,340,179,816	-10,330,300,522	-10,996,379,761
III. 이익잉여금	-209,194,613,094	157,783,750,227	22,287,661,166
자본총계	262,202,227,309	487,262,851,369	450,625,776,934
I. 운용수익	-198,692,184,650	170,093,695,655	30,949,078,052
이자수익	170,053,649	194,944,459	123,742,469
매매/평가차익(손)	-198,937,262,911	169,371,861,238	30,557,478,346
기타이익	75,024,612	526,889,958	267,857,237
II. 운용비용	10,502,428,444	12,309,945,428	8,661,416,886
관련회사보수	10,388,117,364	12,222,770,198	8,610,110,312
기타비용	114,311,080	87,175,230	51,306,574
III. 당기 순이익	-209,194,613,094	157,783,750,227	22,287,661,166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